#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 徵收條例廢止條例案

大 田 廣 域 市

####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



提出年月日: 1995. 5.

提 出 者:大田廣域市長

## 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- 1970년부터 抗結核劑 處方別 普及手數料를 大田廣域市 抗結核制 普及手數料의 規定에 依據 徵收 再活用 해왔으나.
- 結核豫防法(第29條) 및 同法 施行令(第22條)이 改正되어 抗結核 普及手數料 徵收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(自治區)의 條例로 定하도록 規定되어 있어,
- 大田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하려는것임

## 2. 參考事項

- 關聯法規
  - · 結核豫防法 第29條 第3項
  - · " 施行令 第22條 第2項
  - · 大田廣域市 抗結核劑 普及手數料 徵收條例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대전광역시 자치구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# 關 聯 法 規

#### □ 結核豫防法 第29條

第29條(傳染性 結核患者의 醫療) ①市.道知事는 保健福祉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各 管轄區域 내에 居住하는 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迅速한 醫療를 實施하여야 한다. (改正 '93. 12. 27)

②第1項의 醫療를 專擔하는 醫師.看護師.臨床病理士 및 看護助務士(이하 "結核管理要員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臨床硏究에 所要되는 費用(醫師의 경우에 限한다)과 結核傳染危險性에 대한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. (改正 '87. 11. 28)

③第1項의 醫療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하는 手數料 또는 醫療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(改正 '93. 12. 27) (全文改正 '79. 12. 28)

#### □ 結核豫防法 施行規則 第22條

第22條 (권한의 위임) ①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權限을 市·道知事에게 委任한다.

- 1. 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 健康診斷命令
- 2. 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就業整備 및 禁止命令
- 3. 法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命令
- ②法 第제44條의 규정에 의하여 市·道知事의 權限중 다음의 權限을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(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)에게 委任한다.
  - 1. 法 第4條 第2抗의 規定에 의한 정기 健康診斷 날짜 또는 期間의 指定
  - 2. 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公告 .
  - 3.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證明書의 交付
  - 4.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한 醫療의 實施

제 8편 보건사회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

# ●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[.1989.1.1 조례 제1713호]

개정 1994. 1. 11 조례 제 2346호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"일반환자"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 의료보호증의 발급을 받지 아니한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 자 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 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수수료) 항결핵제의 처방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

제4조 (수수료의 징수) 수수료는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당해 보건소장이 징수한다.

제5조 (수수료징수 및 불입) 수수료는 항결핵제 보급시마다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

제6조 (수수료 재활용)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
- 2.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
- 3. 우수 결핵관리 요원의 비상금
-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.

제7조 (징수비 교부) 광역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징수금 중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.

제8조 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조례 제 1713호)

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8편 보건사회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
부 칙 (조례 제2346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8편 보건사회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

(별표) <개정 '94. 1. 11 조례 제2346호>

항결핵제 처방별 보급 수수료

(단위:원)

처 방 중 류	.) 3	수수료
처 방 종 류 	기 준	일반환자
○ 에탐부톨+파라지나마이드+리팝피신	1인1개위	2,600
○ 에탐부톨+파라지나마이드+카나마이신		1,800
○ 파라지나마이드+리팜피신+카나마이신		3.400
○ 에탐부톨+리팜피신+카나마이신		2,400
○ 에탐부톨+피라지나마이드		1.000
○ 에탑부톨+리팜피신	•	1.600
○ 에탐부톭·아이나·파스·스트렌토마이신 .		무료